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EIS) 초안 준비 기안 및 100년 홍수 및 저지대 재개발을 위해 뉴저지주 버건카운티내 홍수방지 프로젝트인 디자인 메도랜즈가 제안한 활동 보고서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공고

조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작성을 위한 공지

요약

미 주택국(HUD)은 뉴저지주 공공사업국(NJDCA)을 통해 뉴저지주를 대신하여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이 미 주택국 기금의 수여자이며 주택국 규정 24 CFR Part 58.2(a)(7)(i)에서 "당국"라는 용어를 정의하듯이 책임의 "의무를 지는 독립체"로서 RBD Meadowlands에 의해 기(旣) 제안된 홍수방지 프로젝트 관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준비의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다. 뉴저지주 공공사업국(NJDCA)을 통해 뉴저지주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의거하여 기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준비를 하는 주요담당기관으로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을 지명한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버건카운티 내 리틀페리, 무나키, 칼스탯, 티터보로, 그리고 해켄색 남부 지역(통틀어 프로젝트 지역)에 침수위험감소 정책수립의 대안들에 대한 환경적 효과를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안 및 강(하천)의 영향을 다루도록 계획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폭우 및 강력한 폭풍을 포함하며 해수면상승과 폭풍에 의해 프로젝트 지역 내 인간 환경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해안 및 강(하천)의 홍수범람에 의한 파장을 다루도록 계획될 것이다. 프로젝트 지역의 대략적인 경계선은 해켄색 리버가 최동부지역, Paterson Plank Road및 Carlstadt 남쪽 분계지점이 최남단, Route 17이 최서쪽, 그리고 Little Ferry 의 북쪽지역 및 Interstate 80이 최북단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기금은 2013년 1월29일 제정된 재난구호예산법(Pub.L.113-2)에 의해 책정된 기금이다

1974년 수립된 Robert R. Stafford 재난구조 및 비상사태 지원법(Stafford Act)에 의거하여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선포되었었다.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주요 재난재해에 의해 피해충격이 크고 고통을 받은 지역들에 대해 재난구조, 장기적 회복, 기반시설 복구 및 주택 복구, 그리고 경제활성화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3년 재난구호예산법(Pub. L. 113–2, approved January 29, 2013)이 제정되었으며 기금이 책정되었다. 이 책정된 기금은 주택국 향토개발 및 재해복구 정액보조금 기금(CDBG-DR)으로서 뉴저지주가 뉴저지주 공공사업국(NJDCA)을 통해 본 기금의 양수인이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주택국과 허리케인 샌디 재건 태스크포스가 공동주최한 RBD(Rebuild by Design) 대회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서 개발 및 선정되었다. RBD대회는 허리케인 샌디에 의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혁신적인 복원력 증강 프로젝트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 주택국은 본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수행을 위한 향토개발 및 재해복구 정액보조금 기금(CDBG-DR)을 1억 5000만 달러로 산정 및 할당했다. 향토개발 및 재해복구 정액보조금 기금(CDBG-DR)의 수령액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 준비를 위한 공고 기안서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의거, 환경특성심의회(CEQ) 국가환경정책법(NEPA) 내 40 CFR Parts 1500-1508 규정에 의거, 주택국의 24 CFR Part 58 규정에 의거, 그리고 2014년 10월 16일 연방정부의 공보문서(79 FR 62182)에서 발표된 주택국의 추가적인 환경검토 요건에 의거하여 발행된다. 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준비를 위한 공고 기안서는(40 CFR Part 1508.22에서 정의하듯이) 환경특성심의회(CEQ) 규정에 의거하여 40 CFR Part 1501.7에 요약된 것과 같이 공공직무권한범위절차를 개시함을 보고한다.

공공직무권한범위문서(Draft Public Scoping Document)의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준비를 위한 직무권한범위작업의 초안이라고도 불리며 www.rbd-meadowlands.nj.gov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직무권한범위작업의 초안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대안책의 초기범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에서 다뤄져야 할 자원영역, 제안된 분석적 방법론, 그리고 본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타 요소 등을 서술하며, 지금과 같은 초기단계에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절차라고도 알려져 있다.

공공직무권한범위 지정절차 이후 제안된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초안이 준비가 된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다고 확인이 되면, 공고문이 해당 정부 기관, 그룹, 그리고 개인에게 전달이 된다. 공고문 전달이 되는 대상은 초안에 명시된 환경 영향 이슈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초안에 연관 또는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부기관, 그룹, 그리고 개인이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초안 공고문은 주택국(HUD)과 환경특성심의회(CEQ)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공보문서 및 지역 지방언론을 통해 발행될 것이다.

만약 개인 또는 정부기관에서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의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 초안을 수령하기 원하고 주석달기를 원한다면 2016년 7월 21일까지 본 기안서 내 "그 외 정보"(FOR FURTHER INFORMATION) 란에 가서 해당담당자 이름을 확인 후 연락을 취해야 한다.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의 초안에 주석 추가하기

기한일자: 본 기안서에 의해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의 초안에 주석을 다는 것은 2016년 7월 21일까지 또는 본 기안서가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주소: 본 기안서 내 "그 외 정보"(FOR FURTHER INFORMATION) 란에 지명된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에 명시된 이름만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의 초안에 주석 추가한 것을 제출할수 있도록 제한한다.

주석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제출 요망:

(1) 공공사업국(NJDCA) 온라인 http://www.nj.gov/dca/divisions/sandyrecovery/review/

(2) 국내우편 : Ms. Laura Shea, Assistant Commissioner, Sandy Recovery Division, New Jersey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101 South Broad Street, P.O. Box 800, Trenton, NJ 08625-0800

또한 2016년 7월 6일로 예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 직무권한범위 회의시 주석들이 수용될 것이다. 직무권한범위작업 최종본의 수락, 증명, 배분에 앞서 기한일자인 2016년 7월 21일까지 접수된 주석들만 고려대상이 된다. 고려대상으로 간주되는 주석들은 공공직무권한범위 지정 기간동안 받은 실질적인 주석들을 반영 할 것이며 EIS 초안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요소로서 사용될 것이다. 주석들은 또한 (a) 본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 또는 계획된 기타 환경연구 정보 또는 프로젝트 지역에서 이미 완성된 정보 (b) EIS 초안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주요 이슈들 (c)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완화적인 정책 권장사항 등 이상 (a)(b)(c) 3가지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법적으로, 특별한 전문성으로, 또는 특별한 관심에 의해 연방기관에서 관할권(사법권)이 발생하는 경우 관심과 준비되었음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EIS를 지원하는 "Cooperating Agency"(협조기관)임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그 외 정보"(FOR FURTHER INFORMATION) 란에 언급된

국가역사 보존시행령(NHPA) 에 의거 Section 106 자문으로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기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과 정부기관은 목적 및 필요성, 대안책의 범위, 세부사항 정확도, 방법론, 그리고 그 외 직무권한범위작업의 초안 관련 기타요소들에 대해 주석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기회는 일반인들과 정부기관의 지원활동에 의해 가능해지는데 공공직무권한범위 미팅(본 문에서 이미 설명), EIS 준비관련 지역사회자문그룹 미팅진행, 필요에 의한 연관되고 관심을 보이는 정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미국내 인디언부족들을 포함한 Section 106 자문과의 미팅 등이 지원활동의 범위에 해당한다. 완성 후 공개과정을 거치면 EIS초안은 일반인과 정부기관의 검토결과 및 주석들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열람기능이 제공된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이 주요기간으로서 국가환경정책법(NEPA), 40 CFR Parts 1500–1508상에 명시된 환경특성심의회(CEQ) 규정, 그리고 24 CFR Part 58에 명시된 주택국(HUD)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S)는 작성될 것이다. 미연방법전 42 U.S.C. 5304(g) 와 주택국 규정 24 CFR Part 58 ("주택국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킨다는 가정하 업체들의 환경적 검토절차"라는 제목)에 의거하여 제안된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해 뉴저지주 공공사업국(NJDCA)은 국가환경정책법(NEPA) 주요기간의 책임을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며, 주택국은 뉴저지주 공공사업국을 통해 뉴저지주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권한에 대한 전제조건을 준비한다.

EIS는 또한 필요시 국가역사보존시행령(NHPA)의 Section 106,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행정명령 11988 "소수집단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환경적 공정성을 다루기 위한 연방정부의 조치", 행정명령 11990 "습지보호", 행정명령 11988 "범람지역 관리", 행정명령 13690 "홍수피해 위험부담 관리기준 설립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 및 고려 절차 설립"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주, 지역 법률 및 규정에 준수한다.

그 외 정보(FOR FURTHER INFORMATION)

그 외, 직무권한범위작업의 초안 복사본을 원한다거나, 직무권한범위작업 초안문서에 주석을 추가하고 싶거나, 그리고/또는 제안된 프로젝트 관련 질문이 있을시 NJDEP에 연락요망. (1) 이메일 : rbd-meadowlands@dep.nj.gov 또는 (2) 국내우편 : Mr. Dennis Reinknecht, RBD Program Manager,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fice of Flood Hazard Risk Reduction Measures, 501 East State Street, Mail Code 501-01A, P.O. Box 420, Trenton, NJ 08625-0420

일반인들도 만약 직무권한범위 초안을 보기를 원한다면 Rebuild by Design-Meadowlands 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오. www.rbd-meadowlands.nj.gov.

추가정보

A. 프로젝트 배경

주택국은 RBD 경쟁대회를 2013년 여름(7월 29일, 2013년, 78 FR 45551)에 허리케인 샌디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해 직접적,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시하였다. 경쟁대회는 피해지역 복원력을 증강시키는 유동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촉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경쟁대회에서 최우수작품 중 하나로써 프로젝트 지역의 침수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주택국에서는 제안된 프로젝트를 위해 뉴저지주에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상을 수여한 RBD design으로부터 기인하여 EIS는 프로젝트지역 내 해수면 및 강을 통해 범람하게 되는 홍수의 영향에 대적하도록 설계된 홍수피해 위험요소 감소정책계획을 진행시 파생되는 특정 대안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프로젝트지역은 내륙지역이던 해안지역이던 홍수피해에 취약하다. 프로젝트 지역 내 저지대 지역에서 해안지역의 폭풍 해일을 감당 못하는 취약점들이 허리케인 샌디를 통해 밝혀졌다.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는 강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해안지역의 폭풍 해일에 의한 홍수피해보다 훨씬 더 잦았다. 그러나, 허리케인 샌디의 경우 강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폭풍 해일에 의한 홍수피해보다 현저히 낮았다. 만약 허리케인 샌디가 엄청난 강우와 해안가의 폭풍 해일을 동반했더라면 프로젝트 지역에 강한 강우에 의해 여태까지 발생됐던 홍수피해 기록들보다 훨씬 더 홍수피해 수준과 재산피해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허리케인 샌디는 프로젝트 지역에 극명한 피해를 입혔고, 특히 프로젝트 지역의 복원력 부족을 강조했으며 샌디와 같은 메이저 급 태풍이 오면 취약지점에 거주하는 거주자들과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할수 있는 충분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피해들은 조수가 밀려듬에 따라 거주지역 및 상업지역의 엄청난 피해, 병원과 같은 주요 건강관리 시설의 피해, 주요 전기, 교통,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의 재기능 구실 불가 등 대규모 내륙지역의 홍수피해를 포함한다.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는 대략 1,600 가구와 600 렌트자산, 1,900개의 상업지구가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를 입었다.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손실, 재산세 손실, 기타 샌디관련 재산피해는 대략적으로 4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재산피해 단독으로 피해금액만 2천만 달러에 이른다. 프로젝트 지역내 각각의 건축구조물들에 대한 재산피해금액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1,000에서 $12,000 사이다. 프로젝트 지역내 피해를 입은 건축구조물들 중 30%에 육박하는 건축구조물들은 렌트를 하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허리케인이 휩쓸고간 직후 세입자들은 피해입은 거주지역을 대체할 새로운 거주지역을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급히 찾는 것에 어려움을 줘었다.

제안된 프로젝트의 목표는 프로젝트 지역 내 홍수피해 위험도를 감소시킴으로써 향후 폭풍과 같은 재해가 닥치면 피해, 충격,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B. 제안된 프로젝트의 목적 및 필요성

제안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및 강의 범람으로 거주지역환경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홍수피해 위험감소 정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다루도록 고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젝트의 목적은 프로젝트 지역 내 홍수피해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추후 발생하게 될 메이저급 홍수피해로부터 주요 기반시설, 거주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을 보호하는데 있다.

본 프로젝트는 아래의 사안들을 다루어야 한다.(1) 집중호우/빗물에 의해 발생하는 내류지역 홍수의 체계. (2) 폭풍 해일과 비정상적인 만조에 의한 해안지역범람.

본 프로젝트는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지역 내 홍수피해 감소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공중 위생, 그리고 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홍수보험료 및 홍수피해 클레임 지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원할수 있는 기금을 동원하여 잠재적으로 가능선 까지는 재산/자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주요 의료서비스, 응급치료 및 긴급 서비스, 교통 및 전기 등의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지역발전의 회복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공통혜택이 주어지는데 홍수피해위험요소 감소전략을 도시적, 문화적, 복지적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능동적 및 수동적 복지적 차원, 다목적/다용성 시설물, 공공장소, 그리고 기타 설계요소들을 전부 포함하여 본 프로젝트에 가용가능한 기금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까지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일부로 통합되도록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다루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가공건물들과 같은 기반시설(예를들어 칸막이 벽 또는 제방시설물 건축)과 조경과 같은 기반시설 (예를 들면 둔턱을 세운다거나 강가에 제방을 위해 흙을 쌓는 일)과 배수시설 개선 등을 전부 결합 및 갖추었다. 이는 담수지역과 목초지 내 습지대가 자생적으로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느 정도의 강수량에 대한 수용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했다. 본 프로젝트는 뉴저지주 스포츠 전시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습지대 복구노력에 연계됨으로써 잠정적으로 현 복구노력 및 가까운 미래까지도 협력관계가 유지 될 것이다. 도시개발의 특성 및 기능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체계와 통합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켄색 강을 따라 자연지역을 향상시키고 공공용지를 일반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복지시설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등 보조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성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EIS를 통해 조사 할 예정이다.

C. 프로젝트 대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옵션도 있고 그 외에 총 3가지의 옵션(대안)들을 EIS는 조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홍수피해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세가지 옵션들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옵션들은 제안서에 프로포즈된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옵션1은 제방, 모래턱, 벽, 또는 홍수방벽의 사용을 통한 홍수피해감소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옵션2의 경우 프로젝트 지역 내 홍수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지역별 배수시설 개선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옵션3은 옵션1과 2를 합쳐놓은 것으로 공공기반시설 및 배수시설의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각각의 옵션들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건축적인 가능성 여부 분석과 예비선결기준의 적용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 중이다. 이 옵션들은 EIS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수정될 것이다. 각각의 옵션들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가용가능한 CDBG-DR 기금의 한도 내 까지 가용하여 시행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제안된 세가지 옵션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옵션1 또는 구조적 홍수피해감소 옵션.

옵션1은 다양한 구조적이고 공공기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해결방안 등을 분석할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강(하천), 조수간만의 차 / 폭풍 해일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이다. 옵션1은 프로젝트 지역에 부분적으로 실질적인 가능선까지 FEMA(미연방재난 관리청)에서 선정한 홍수보호 보증수준을 제공한다. 옵션1은 구조물의 다양한 범위로 구성 될 수 있는데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필수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제방, 둔덕, 배수시설 구조물, 펌프실, 방조문, 그리고/또는 그 외 기타 공공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그 외에 상이한경로 및 상이한홍수피해 보호수치들 또 한 고려대상이다.

옵션2 또는 강(하천) / 강우에 대한 배수시설 개선 옵션.

프로젝트 지역에 발생하는 홍수의 빈번의 횟수가 높고 작거나 중간사이즈의 홍수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진행중인 배수시설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옵션2는 분석 하게 된다. 이러한 개입은 개선된 강우량 관리체계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별 배수시설 개선과 습지대복구를 통해 프로젝트 지역을 보호하며 매일매일 강수량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개입에는 전략적 지역에 배수로, 상하수도 관, 펌프실 등을 포함하며, 도로지면의 상승, 신 녹색 기반시설(예를들어 습지대 배수지역, 식물을 위한 배수시설), 저수지, 강우량 통제 구조물, 현존하는 수로 청소 및 뚫는 작업, 공공용지의 증가 및 향상 등이 포함된다.

옵션3 또는 하이브리드 옵션.

옵션3은 프로젝트지역 내 홍수피해감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적인 신공공기반시설과지역배수시설의개선의 혼용을 분석할 것이다. 옵션1과 옵션2의 구성요소들이 합쳐져 적절한제방, 둔덕, 배수시설, 펌프실 그리고/또는 방조문을 골고루 운용하고 지역배수시설 개선 프로젝트와 짝을 이루어 프로젝트 지역 내 홍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통합된 하이브리드 해결방안이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옵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옵션은 40 CFR Part 1502.14(d) 에 따라 환경특성심의회(CEQ)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될 예정이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옵션은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개선책을 수행하지 않은 상황 또는 현재의 상황을 의미한다.

위에 나열한 각각의 옵션들은 24 CFR Part 58에 의하여 인간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을 전부 시뮬레이션 돌려 비교할 것이며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각각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EIS초안에 상세설명 될 것이며 옵션 중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옵션선정으로 유도될 것이다.

D. EIS의 필요성

본 문서에서 설명되었듯이 본 프로젝트는 인간의 환경의 질에 잠재적 또는상당하게 큰 영향을 끼친다. 고로 EIS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필요조건에 부합하여 준비 된다.

본 기안서에 대한 회신은 아래와 같이 사용 될 것이다. (1)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이슈들 결정. (2) 고려해야 할 방안에 대한 범위 결정. (3) EIS에서 다뤄야 할 이슈들 선별. (4) EIS 과정과 본 프로젝트에 연관이 될 정부기관과기타 당사자들 식별

E. 직무권한 범위

공공직무권한범위 지정 미팅은 2016년 7월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Robert J. Craig School이고 주소는 20 West Park Street, Moonachie, NJ 07074 이다. 본 미팅장소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사전에 의뢰시 청각 또는 시각 장애우를 위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언어장벽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의뢰시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EIS 직무권한범위 미팅은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민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미팅은 EIS와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미팅이 진행되면 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개요가 제공되며 대안책들의 초기발달과정에 대한 상세항목들도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본 미팅에서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 초안에 일반인들도 참여하여 주석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미팅진행시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주석을 위해 일반인들에게도 열람권한이 주어진다. 인터넷상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며,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www.rbd-meadowlands.nj.gov.

본 기안서 내 "그 외 정보"(FOR FURTHER INFORMATION) 란에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 초안에 추가된 주석들이 제공될 수도 있으며 또는 미팅도중에 제공될 수도 있다.

본 기안서에 의해 직무권한범위 지정작업의 초안에 주석을 다는 것은 2016년 7월 21일까지, 또는 본 기안서가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주석을 추가 후 제출할 수 있는데, 둘 중 더 늦는 날짜를 기한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F. 기대되는 환경적 효과

EIS상에서 식별된 분석들은 아래의 분야를 포함한다: 내륙지역 및 내륙지역 계획 / 시각적 및 미학적 질 / 사회경제적 및 지역사회, 인구 및 주택 / 환경적 정의 / 문화적 및 역사적 자원 / 대중교통, 교통량, 공항통제를 포함한 교통 순환 / 공음 및 진동 / 공해 / 온실가스 배출 / 국제적 기후변화 / 오락 / 전기 및 서비스 체계 / 공익사업 / 위험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자원 / 지질학 및 토양 / 범람원 관리를 포함한수문학 및 홍수 / 습지를 포함한 미국내 수자원, 수질 및 상수 / 해안지역관리 / 위험 및 위험한소재 / 누적되는 영향 및 효과

G. 100년된 범람원과 습지대 지역 관련 제안된 활동 보고서에 대한 조기 공적감리 공고문 기안서

본 공고문 기안서는 24 CFR Part 55에 의거하여 100년된 범람원과 습지대 내에 본 프로젝트의 기금이 연방정부에 제안되었음을 알린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은 본 프로젝트의 위치설정을 위해 실행가능성 있는 대안책을 식별 및 평가할 것이다. 이는 행정명령 11988(범람원 관리) 및 행정명령11990(습지 보호)에 의해 법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며 24 CFR Part 55.20 Subpart C, 습지보호 및 범람원 관리에 대한결정 절차,에 의한 주택국 규정에 의거한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프로젝트 지역에 홍수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들에 대항하여 주요 공공기반시설, 거주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을 보호함에 있다. 프로젝트 지역은 리틀페리, 무나키, 칼스탯, 티터보로, 그리고 해켄색 남부 등 뉴저지주 내 버건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젝트 지역의 대략적인 경계선은 해켄색 리버가 최동부지역, Paterson Plank Road및 Carlstadt 남쪽 분계지점이 최남단, Route 17이 최서쪽, 그리고 Little Ferry 의 북쪽지역 및 Interstate 80 이 최북단 지역으로 구분된다.

프로젝트 지역은 대략 6,000 에이커에 이른다. 프로젝트 지역의 대부분은 FEMA에서 선정한 홍수보험료 지도(FIRM) 상에서 "A" 지역 범람원에 위치한다 34003C0262G, 34003C0266G, 34003C0258G, 34003C0259G, 34003C0257G, 34003C0256G, 34003C0252G, 34003C0254G, 34003C0253G, and 34003C0261G.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지역은 해켄색 강 아래쪽과 파싸익 강(Passaic River)에 하구조건과 관련된 조수로 인해 형성된 넓은 새로운 습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wet depression(늪지와 비슷)과 작은 개울가중 민물기생초본과 목질종류는 고조위선(만조선) 이상에서 발견된다. 대안책에서 제안된 대로 배수시설 개선 공사 및 기타 다양한 공공기반시설 공사시 습지는 방해를 받아 습지로서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

본 기안서에는 세가지 주목적이 있다.

첫째, 본 프로젝트에 의해 어떠한 활동이 착수될 경우, 범람원 및 습지에 대해 자연환경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심려와 걱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둘째, 공공에게 충분히 알리는 프로그램은 공공에게 교육하는 도구로서 중요하다.

주석을 다는 분들은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동일하며 충격을 완화 및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한다. 범람원 및 습지에 대하여 정보보급 및 일반인이 다는 주석을 요청하는 것은 이런 특정지역에 대한 사용 및 변경과 관련하여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용이하게 하며 향상시킨다.

셋째, 공정성을 위해 연방정부가 범람원 및 습지에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으로 인해 더 큰 위험 또는 지속적인 위험을 받게되는 당사자에게 꼭 통지해야 한다.

H. 담당 기관

24 CFR Part 58에 따라서 주택국(HUD)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국(DCA)은 환경검토를 돕고 EIS를 준비하도록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지정하였다. 질문은 본 기안서 "그 외 정보"에 지정된 이름으로 하면 된다.

본 기안서에 대해 수기작성한 주석은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으로 제출하면 된다.: (1) 이메일 rbd-meadowlands@dep.nj.gov; (2) 국내우편 Mr. Dennis Reinknecht, RBD Program Manager,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fice of Flood Hazard Risk Reduction Measures, 501 East State Street, Mail Code 501-01A, P.O. Box 420, Trenton, NJ 08625-0420; (3) DCA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nj.gov/dca/divisions/sandyrecovery/review/.

또 다른 대안으로 수기작성 한주석은 일반우편으로 아래의 주소에 보내면 된다.

Ms. Laura Shea, Assistant Commissioner, Sandy Recovery Division, New Jersey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101 South Broad Street, P.O. Box 800, Trenton, NJ 08625-0800.

100년된 범람원과 습지대 지역 관련 제안된 활동 보고서에 대한 조기 공적감리 공고문 기안서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EIS) 초안준비 의향 기안서에 대하여 주석을 다는 것은 2016년 7월 21일까지, 또는 본 기안서가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주석을 추가 후 제출할수 있는데, 둘 중 더 늦는 날짜를 기한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모든 주석들은 뉴저지주 환경보호국(NJDEP)에 의해 고려대상이 될 것이며 본 기안서의 어느부분에 대한주석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